

인가번호 제 호

(조합 · 사업조합 · 연합회) 설립인가증

1. 명 칭:

2. 대표자 성명:

3. 주 소:
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2조·제81조·제9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설립을 인가합니다.

년 월 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시·도지사

직인